

瑞山市駐・停車違反車の牽引等に関する條例案  
**審 查 報 告 書**

2000. 10.19  
産業建設委員會

## 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2000. 10. 6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2000. 10. 9
- 라. 上程日字 : 2000. 10. 19

## 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交通行政課長 鄭祥德)

### 가. 提案理由

- 그동안 주·정차 위반차량의 견인·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충청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로 시행하여 왔으나 도조례가 폐지되고,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주·정차위반차량의 견인·보관 등에 관한 업무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主要骨子

-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·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주·정차 단속공무원증을 항상 휴대하고, 주·정차 위반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함(안 제3조).

- 단속공무원은 단속시에 항상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고 단속에 임하도록 하고, 주·정차 위반차에 대한 견인·보관 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고시토록 함(안 제4조, 제5조).
-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소요비용이 산정기준을 정하고, 견인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의 규정한 금액을 명시하여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였으며, 견인대행 업체가 대행할시는 대행업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고, 소요비용은 서산시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규정함(안 제6조).
- 도로교통법 제31조의 규정에 견인한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에 한 한다는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에 대행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대행법인등의 지정 및 업무대행에 관련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.
- 주·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각종 서류 등을 비치 관리토록 하고, 보관 및 기타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(안 제8조).
- 견인대행업체가 견인비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치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- 견인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과 견인대행업체간에 협약을 체결토록 함(안 제10조).

### 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본 조례는 서산시주·정차위반자동차의견인·보관등에 관한 업무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예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,

-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주·정차위반자동차에 대한 규정 사항을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처리토록 되어 있으며,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산시공고 제 2000-123(2000.4.25)호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이 없었으며, 시행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마련하였음.
- 그동안 충청남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임 처리하던 것을 도 조례가 폐지되고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제정하여 운영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**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** 생략

**5. 討論 및 少數意見 :** 없었음

**6. 審査結果 :**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/기호
의결 년월일	2000. . . (제 회)

**서산시주·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**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2000년 〇월 6일

# 서산시주·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제 / 가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4. 6.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## 1. 제정이유

- 그동안 주·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업무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「충청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」에 근거하여 시행하여 왔으나,
- '99.5.27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(시·군조례로 정하도록함)으로 '99.8.10 「충청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」가 제2795호로 폐지됨에 따라,
- 같은법시행령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바에 의하여 시 견인 자동차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.

## 2. 주요 골자

- 가. 주·정차 단속공무원증, 제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,제4조)
- 나. 주·정차위반과 관련하여 위반자동차에 대한 견인·보관·반환 등의 절차, 소요비용(견인비 등)의 산정기준을 정함(안 제5조,제6조)
- 다. 견인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및 견인된 차량의 보관·관리 방법을 정함(안 제7조,제8조)
- 라. 견인대행업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 보조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, 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련법령

-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제31조의2
-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 제3항

### 나. 입법예고 결과 의견

- 예고기간 : 2000. 4. 25 ~ 2000. 5. 15까지
- 의견사항 : 제출된 의견사항 없음

※ 따로붙임 : ① 조례전문 ② 관련법령발췌사본

서산시주·정차위반차량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주·정차위반 차량의 견인·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및 같은법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주·정차위반차”라 함은 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.
2. “견인”이라 함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·정차위반차를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.
3. “소요비용”이라 함은 주·정차 위반차의 견인·보관 및 견인통보와 공고등 영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매각·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주·정차단속담당공무원)** ①영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·정차단속담당공무원(이하 “단속공무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한 주·정차단속담당공무원증을 교부한다.

②단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공무원증을 항상 휴대하고 주·정차 위반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단속공무원의 제복 등)** ①단속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.

②단속공무원의 피복 등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5조(견인보관장소의 지정)** 시장이 주·정차위반차에 대한 견인보관장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소요비용)** ①영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

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견인대행업체가 대행할 시는 대행업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.  
③시장이 부과·징수하는 소요비용은 서산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.

**제7조(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)** ①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대행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에 한한다.

②영 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견인대행요원증을 교부하며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8조(견인대장등)** ①시장 또는 대행법인등은 견인대장을 갖추고 주·정차위반차의 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대행법인등이 주·정차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.

③대행법인등이 보관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에 반환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9조(보조금지급)** 시장은 견인대행업체가 견인비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**제10조(견인업체와의 협약)** 견인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과 견인대행업체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.

**제11조(대행법인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)** 영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한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주·정차단속공무원증

성명

소속

주민등록번호

사 진

위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,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·정차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.

※유효기간 :    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 월        일

서    산    시    장

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

1.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2.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3.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.
4.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

[별표 2]

## 견인비용 산정기준

### 1. 견인요금표

구 분	견 인 료		비 고
	견인요금(편도 5km까지)	추가요금(매km증가시)	
2.5톤 미만	20,000원	2,000원	
2.5톤 이상 6.5톤 미만	25,000원	2,500원	
6.5톤 이상	40,000원	3,000원	

### 2. 보관요금

서산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요금을 준용한다.

### 3. 기타

견인비용·통보비용(우편료) 및 공고, 매각, 폐차 비용 등은 실비에 의한다

[별표 3]

<b>견인대행요원증</b>	
<b>성 명</b> <b>소 속</b> <b>주민등록번호</b>	<b>사 진</b>
<p>위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31조의2,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5,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거한 주·정차위반차의 견인·보관대행요원임을 증명합니다.</p> <p>※유효기간 :       년    월    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 월        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서    산    시    장</b></p> <p>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</p>	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</li> <li>2.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</li> <li>3.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.</li> <li>4.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</li> </ol>	